

의안번호	2217237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2.
추 계 번호	26B098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	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<u>경찰관서·소방관서의 장</u>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·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하며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함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·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함(제1항) ※ 동물의 구조·보호 주체에 경찰관서·소방관서의 장 포함	의무규정
		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<u>경찰관서·소방관서의 장</u> 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<u>경찰관서·소방관서의 장</u> 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(제3항). <u>다만,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동물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<단서 신설></u>	의무규정
		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<u>경찰관서·소방관서의 장</u> 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(제4항). <u>다만, 경찰관서·소방관서의 장이 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<단서 신설></u>	재량·의무규정
		<u>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·보호 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(제5항 신설)</u>	의무규정
2	안 제34조의2(구조·보호에 관한 교육) 신설	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경찰관서·소방관서의 장은 동물의 구조·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물의 구조·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4조의2(구조·보호에 관한 교육) 신설	

2. 상세 사유

□ 동물의 구조·보호 조치 주체 확대 및 구조·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(안 제34조 및 제34조의2)

- 개정안은 동물의 구조·보호 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경찰관서·소방관서의 장이 동물의 구조·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물의 구조·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면서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 동물의 구조·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물의 구조·보호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물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복지정책에 대한 실무 전문성 및 정책 집행력 강화,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조치 안내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

[표 1]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·복지 담당 인력 현황

(단위: 명)

	2022	2023	2024
동물보호·복지 담당 인력	774	765	801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(출처: '24년 동물보호·복지 실태조사)

[표 2] 동물복지 인식개선 교육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 내용	2026 예산
동물복지·안전관리 강화 지원 (3741-338) 동물복지 인식개선	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에 맞추어 동물학대 방지, 돌봄의무 강화, 개물림 사고 예방 등 국가 차원의 교육·홍보 등 인식개선 확대를 위해 일반국민, 미래세대, 영업자,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	77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동물 구조·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, 경찰관서·소방관서에서 동물 구조·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교육 대상 및 교육 방법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